
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2항에 제7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4. 법 제20조의4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
별표 8 제1호나목 중 “가목에 따른”을 “가중처분 적용”으로 하고, 같은
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
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.

별표 8 제2호의 사목부터 고목을 아목부터 노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사
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자목(종전의 아목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사.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회수한 폐기물 을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지 아 니한 자에게 인계한 경우	법 제45조제2항 제1호의2	600	1,000	2,000
자. 법 제16조의4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 · 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인계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	법 제45조제2항 제1호의3	600	1,000	2,000

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사용하지 않은 경우				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	--	--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5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(생략)	제35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.	② ----- ----- -----.
1. ~ 7의2. (생략)	1. ~ 7의2. (현행과 같음)
7의3. 삭제	
<u><신설></u>	<u>7의4. 법 제20조의4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</u>
8. ~ 24. (생략)	8. ~ 24. (현행과 같음)